

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- 개정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이 '23.11.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.

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*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,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은 계좌간 송금·이체된 보이싱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,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.

* '19년 3,244건(8.6%) → '20년 15,111건(47.7%) → '21년 22,752건(73.4%) → '22년 14,053건(64.4%) [경찰청]

이에 정부는 '22.9.29. 국무조정실 주관 「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」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,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, '23.5.16일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이 개정·공포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.

개정된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르면, 수사기관이 보이싱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,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.

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,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①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, ②전산 개발, ③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,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,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< 참고: 계좌이체형·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>

< 계좌이체형 >



- ① 구두 지급정지 요청
-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
- ⑥ 피해환급금 지급



- ③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
- ④ 채권소멸 사실 통지
- ⑤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



- ① (피해자) 구두 지급정지 요청 →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[3영업일+14일*] → ③ (금융회사)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→ ④ (금감원)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[2개월]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→ ⑤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[2주] → ⑥ (금융회사) 피해환급금 지급

*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

< 대면편취형 >



- ① 구두 지급정지 요청
- ② 서면 지급정지 요청
- ④ 서면 피해구제 신청



-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
- ⑥ 채권소멸 사실 통지
-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



③ 피해경위 조사



⑧ 피해환급금 지급

- ① (수사기관) 구두 지급정지 요청 → ② 서면 지급정지 요청[3영업일*] → ③ 피해 경위 조사 → ④ 서면 피해구제 신청[30영업일*] → ⑤ (금융회사)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→ ⑥ (금감원)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[2개월]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→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[2주] → ⑧ (금융회사) 피해환급금 지급

*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수호 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남명호 (02-2100-2974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국 장	임정환 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 장	서강훈 (02-3145-8521)
	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김종민 (02-3150-2037)
		담당자	팀 장	유지훈 (02-3150-2763)
	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원태 (044-200-8440)
		담당자	사무관	전관호 (044-200-8446)
	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본부장	지순구 (02-3705-5150)
		담당자	부 장	박혜정 (02-3705-5040)
	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상 무	이봉헌 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	김동오 (02-2003-9420)
	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본부장	이경연 (02-397-8617)
		담당자	부 장	양희경 (02-397-8680)
	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	책임자	부문장	추창호 (042-720-1461)
		담당자	본부장	박용남 (042-720-1462)
	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	책임자	상 무	서국동 (02-2080-4603)
		담당자	부 장	김동석 (02-2080-2200)
	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	책임자	부대표	문진호 (02-2240-2034)
		담당자	본부장	이옥진 (02-2240-2200)
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	책임자	상 무	김용배 (02-3434-7123)	
	담당자	부 장	이한범 (02-3434-7220)	
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	책임자	부문장	서상민 (02-2145-9540)	
	담당자	부 장	엄선홍 (02-2145-9545)	